# 정



사단법인대한제과협회

| 설립허가 | 1966. 03. 26 | 보건사회부장관   | 보허 | 제   | 743         | 호 |
|------|--------------|-----------|----|-----|-------------|---|
| 개정허가 | 1972. 05. 13 | 보건사회부장관   | 식품 | 제   | 1436-107750 | 호 |
| 개정허가 | 1980. 12. 02 | 보건사회부장관   | 식일 | 제   | 1436-77058  | ই |
| 개정허가 | 1983. 10. 05 | 보건사회부장관   | 식품 | 제   | 1436-48683  | ই |
| 개정허가 | 1990. 03. 30 | 보건사회부장관   | 위제 | 제 : | 31150-26640 | ই |
| 개정허가 | 1993. 04. 14 | 보건사회부장관   | 위정 | 제   | 65400-313   | ই |
| 개정허가 | 1996. 04. 03 | 보건복지부장관   | 식정 | 제   | 65407-409   | 호 |
| 개정허가 | 2001. 03. 22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0       | 호 |
| 개정허가 | 2002. 03. 27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1       | 호 |
| 개정허가 | 2003. 08. 27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2       | 호 |
| 개정허가 | 2004. 03. 16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3       | 호 |
| 개정허가 | 2006. 03. 14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5       | 호 |
| 개정허가 | 2007. 08. 20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7       | 호 |
| 개정허가 | 2011. 09. 29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8       | 호 |
| 개정허가 | 2012. 04. 03 | 보건복지부장관   | 허가 | 제   | 17-29       | 호 |
| 개정허가 | 2016. 06. 28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허가 | 제   | 39-1        | 호 |

개정허가 2025. 02. 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제 호

## 목 차

| 제1장 | 총  | 칙  |     | 1 |
|-----|----|----|-----|---|
| 제2장 | 회  | 원  |     | 1 |
| 제3장 | 기  | 관  |     | 2 |
| 제4장 | 사  | 업  | Ę   | ō |
| 제5장 | 임원 | ᆝ및 | 사무처 | 3 |
| 제6장 | 재  | 정  |     | 7 |
| 제7장 | 지회 | ᅵ및 | 지부  | 3 |
| 제8장 | 해신 | ᆝ및 | 청산( | 9 |
| 부 칙 | ļ  |    |     | n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제과·제빵 제조 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식품 위생과 영양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Bakery Association(약칭 KBA)이라 표기한다.

제3조(구성) 협회 업무구성은 전국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 ①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 환로 335길 37번지에 둔다.

제5조(공고) 협회의 공고는 개별통지와 주요일간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협회 회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받은 제빵, 제과, 제병, 냉동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회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가입 및 구성)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본회, 서울특별시 각 구 지회, 각 광역시 지회 및 각 도지회,

각 시·군·구지부에 가입 할 수 있고 지회 및 지부는 회원명부를 본회에 제출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고 협회 사업에 의한 제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원은 협회 정관과 제반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서류자문) 회원은 허가에 관한 서류 및 기타 민원 등에 관하여 당해 법령 및 법규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하며 본회, 지회, 지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표창 및 징계) 협회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적이 있는 자는 표창하고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징계한다.

#### 제 3 장 기 관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협회세칙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개최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3.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관의 개정
- 2. 세칙의 제정 및 개폐
- 3. 임원선거
- 4. 사업계획의 의결
- 5. 예산, 결산의 승인
- 6. 이사회에서 제출한 의안심의
- 7. 감사보고
- 8. 해산 및 합병
- 9.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총회소집) 총회소집은 회의 10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 고 의장이 된다.

제16조(이사회)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지회장 및 지부장의 취임보고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표창 대상자 추천 후 보고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5. 사무 및 급여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6.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소집) 이사회 소집은 회의 5일전에 통지하여 회장이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 2.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18조(감사의 총회소집) 감사는 협회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총회를 소집하거나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사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 상임위원회) 협회 발전 및 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 재정, 운영상임위원회를 두며 이들 상임위원회의 운영절차 등은 협회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분과위원회) 협회 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성과거양을 위하여 기획, 조직, 기술, 홍보, 구매, 인력, 연구, 마케팅분과 위원회를 두며, 이들 분과위원회의 운영절차 등은 별도의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정족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출석회원 과반수가 될때까지 재투표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개정, 임원의 개선청구, 해산 및 합병은 재적 4분의 3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22조(서면결의) 총회·이사회·위원회 등의 의장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성하는 재적인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제 4 장 사 업

제23조(사업) ①협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제빵, 제과, 제병, 냉동과류의 위생적인 시설과 기술의 연구지도
- 2. 국민식생활 향상을 위한 국제제빵·제과대회 개최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및 제빵기술향상 교육
- 4. 제과점영업 제도개선 및 경영관리 지원
- 5. 단체계약의 체결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선진제빵기술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
- 7. 각종 재료의 공동수급계획 및 부대사업
- 8. 식생활문화 개선과 향상에 관한 사항
- 9. 제과ㆍ제빵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10. 월간베이커리 등 출판 및 홍보사업
- 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교육, 조사연구사업
- 12. 인터넷신문사 등 설립 및 홍보 사업
- 13.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협회의 자율지도사업은 제과업소의 위생관리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율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율지도원의 자격, 임면,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협회의 교육지도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임하는 교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교육지도사업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5 장 임원 및 사무처

제24조(임원)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1인
- 2. 부 회 장 : 7인이상 15인이내(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부회장의 업무수행을 보조·지원 할 중앙위원을 둘 수 있다.)
- 3. 이 사 : 30인이상 40인이내
- 4. 감 사 : 3인

제25조(임원의 선출) ①협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의장단에 일임하며 정·부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②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각급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단, 선출직 임원의 경우 연임은 1회만 가능하고 (※중임 가능) 임기전이라도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개선을 발의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처) 협회의 운영 및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이에 사무총장을 둔다.

- 1. 사무처의 직제는 협회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사무총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제28조(고문 및 자문위원)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직무) 협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일절을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중요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 4. 감사는 협회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제 6 장 재 정

제30조(재산) ①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중앙회 소유 부동산
- ②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본회 기본재산의 내역과 평가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재정) 협회의 재정은 가입금, 회비, 찬조금, 보조금, 수수료, 출판사업료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각분과위원회, 출판사업, 공동구매사업 및 교육사업은 별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2조(경비부과) 협회의 가입금, 회비, 수수료의 징수는 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33조(기본재산처리) 본회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본재산 10%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할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로 한다.

#### 제 7 장 지회 및 지부

제35조(지회 및 지부 등의 설치) 지회 및 지부라 함은 서울특별시각 구 지회, 각 광역시 및 각 도지회, 각 시·군·구지부를 말하며이들 지회 및 지부는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서울특별시각 구 지회는 본회의 직할로 하며, 각 광역시 지회의 각 구 및 각도지회의 관할하에 있는 각 시군 단위에는 지부를, 각 시지부의 각구 단위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지회 및 지부운영) 각 지회 및 지부의 운영은 협회 정관 및 세칙에 준하며 해당 관계관청에 지회 및 지부설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지회장 및 지부장의 취임보고) ①각 도지회장은 각 도청 소재지의 광역시지회장 및 시지부장이 겸임하거나 또는 각 도청소재지의 광역시지회장 및 도지회장이 각각 독립하여 취임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각 구지회장, 각 광역시지회장 및 각 도지회장과 그예하의 각 지부장은 당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때에 회장은 지회장의 임원취임을 승인하고, 지회장은 예하 지부장의 임원 취임 승

인을 한 후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결과를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지회 및 지부의 인준) 신설 지회 및 지부의 인준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장은 지회 및 지부의 인준을 관계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권리의 제한) ①각 지회 및 지부 중 1년 이상 회비납입 업무를 완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각종 사업상의 이익과 대의원의 자격 등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지회 및 지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해산을 명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를 해당 지회, 지부 및 관계관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실시) ①본회는 각 지회(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 분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및 업무지도감사를 실시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정기감사 : 자체감사에 의한다.
  - 2. 수시감사 : 본회 또는 지회가 실시한다.
  - 3. 특별감사 :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에 본회 또는 지회가 실시한다.
    - 가. 조직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 나. 조직의 사업, 업무추진실적이 부진할 때
    - 다. 민원 발생 등으로 감사가 필요할 때
    - 라.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 8 장 해산 및 청산

제41조(지정기부금단체) ①협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보건·복지 증진사업 등 공익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②협회는 기부금 모집을 위한 연간 계획안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 협회의 해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 1. 총회의 결의
- 2. 파 산
- 3. 설립허가의 취소

제43조(청산) 협회가 해산할 시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협회와 유사 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하고 종전부터 시행하는 세칙은 새로운 정관에 의하 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본회가 사용할 인장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부 칙 (2011. 9.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급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2016. 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01.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기본 재산 현황

[단위 : 원]

| 자산분류        | 소재지                        |               | 면적(m')   | 평가액           | 비고 |
|-------------|----------------------------|---------------|----------|---------------|----|
| 대지<br>(중앙회) | 서울 서초구                     | 대지            | 375.3    | 1 000 000 000 |    |
|             | 남부순환로<br>335길 37           | 소 계           | 375.3    | 1,900,000,000 |    |
| 건물<br>(중앙회) |                            | 지하충           | 220.95   |               |    |
|             | 서울 서초구<br>남부순환로<br>335길 37 | 1층            | 181.17   |               |    |
|             |                            | 2층            | 184.77   |               |    |
|             |                            | 3층            | 184.77   | 396,665,700   |    |
|             |                            | 4충            | 184.77   |               |    |
|             |                            | 5충            | 139.58   |               |    |
|             |                            | 소 계           | 1,096.01 |               |    |
|             | 핝                          | 2,296,665,700 |          |               |    |